

의안번호	2209903
의 퇴 인	유동수의원
회 답 일	2025.2.7.
추계번호	25E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등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2,250억원, 2030년 2,727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조 2,414억원(연평균 2,483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조정 (안 제59조의4①)	-2,250	-2,361	-2,477	-2,599	-2,727	-12,414	-2,483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규모별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9조의4제1항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조정 - (현행)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합계액(연 1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세액공제(12%/15%) 적용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12% * 피보험자가 장애인(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인 경우 15% - (개정안)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합계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보험료 납입액 중 <u>자동차보험료</u>는 연 70만원을 한도로 합계액에 포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9조의4제1항 (특별세액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
 -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세수효과 발생(징수 기준)
-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보장성보험료 납입한도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는 현행 기준 총급여규모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인원, 공제세액 총계 자료만을 제공하므로, 보장성보험료 납입한도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한도 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재정패널조사 원자료(2022년 귀속)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
 - 국세통계연보의 경우 개인별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적용인원, 공제세액 등을 집계하며 보험의 종류별 통계는 제공하지 않음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3년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
- 세액공제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감면 실적

□ 2023년 보험료세액공제 규모는 약 1.4조원으로 최근 3년간(2020~2023년) 연평균 4.4% 증가

○ 2023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공제세액 규모는 1.1조원으로 최근 3년간(2020~2023년) 연평균 4.9% 증가

[표 2]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규모 추이 : 전체

(단위: 천명,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0-2023 연평균
적용인원	10,540	10,945	11,488	12,010	12,393	
(증가율)	7.4	3.8	5.0	4.5	3.2	4.2
공제금액	11,484	11,918	12,588	13,158	13,575	
(증가율)	7.5	3.8	5.6	4.5	3.2	4.4

주: 전체 세액공제 신청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규모 추이 :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0-2023 연평균
적용인원	8,352	8,642	9,253	9,814	10,060	-
(증가율)	8.2	3.5	7.1	6.1	2.5	5.2
공제금액	9,480	9,874	10,559	11,148	11,408	-
(증가율)	8.1	4.2	6.9	5.6	2.3	4.9

주: 결정세액있는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현행 및 개정안 기준의 1인당 세액공제금액을 추계한 후, 공제금액 변화분에 적용인원 수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계

- 먼저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총급여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보험료 세액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 변화율(A) 산출
 - 개정안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료 납입액 한도를 12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납입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
 - 재정패널조사의 2022년 기준 가구의 소득 및 가구원 구성을 바탕으로 현행 및 개정안의 총급여규모별 보험료 세액공제금액 추계
- 국세통계연보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보험료 세액공제금액(현행 실적치, B)에 개정안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금액 변화율(A)을 곱해 개정안에 따른 공제금액 증가분을 산출(C)한 후,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자 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

(3) 추계 결과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자동차 보험료 납입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3년 기준 2,0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증가율(4.9%)을 따를 것으로 가정([표 3] 참조)

[표 4]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3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2023년 귀속 국세통계	1인당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금액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금액 변화분	세수효과 (억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인원 ¹⁾	현행 ²⁾	개정안 ³⁾	변화율(%) ⁴⁾		
	A	B	$C=B \times (1+D\%)$	D	$E=C-B$	$H=-(E \times A)$
합계	10,060,267	—	—	—	—	-2,043
1천만 이하	—	—	—	—	—	—
1.5천만 이하	1,912	0.12	0.14	17.7	0.02	0
2천만 이하	87,276	0.12	0.14	17.6	0.01	-10
3천만 이하	1,216,943	0.11	0.14	17.7	0.02	-247
4천만 이하	1,658,915	0.11	0.13	17.9	0.02	-323
4.5천만 이하	814,512	0.11	0.13	17.8	0.02	-158
5천만 이하	764,162	0.11	0.13	18.4	0.02	-156
6천만 이하	1,320,484	0.11	0.13	18.4	0.02	-276
8천만 이하	1,801,450	0.12	0.14	18.2	0.02	-377
1억 이하	1,079,703	0.12	0.14	17.7	0.02	-223
2억 이하	1,157,468	0.12	0.14	18.1	0.02	-245
3억 이하	102,179	0.12	0.13	14.2	0.02	-17
5억 이하	38,714	0.12	0.14	20.0	0.02	-9
10억 이하	12,981	0.12	0.14	17.3	0.02	-3
10억 초과	3,568	0.12	0.14	17.3	0.02	-1

주: 1) 근로소득자 중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자 수(결정세액이 있는자 기준)

2) 2024 국세통계연보(2023년 귀속)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금액

3) 현행 총급여규모별 1인당 세액공제금액에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산출한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변화율을 곱하여 추계

4)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금액을 추계하여 개정안에 따른 변화율 산출, 다만, 5억초과 구간은 표본수가 적어 모의실험결과가 산출되지 않아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변화율(17.3%)과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6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2,250	-2,361	-2,477	-2,599	-2,727	-12,414	-2,483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는 2026년 2,25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조 2,414억원(연평균 2,48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조정 (안 제59조의4①)	-2,250	-2,361	-2,477	-2,599	-2,727	-12,414	-2,483

-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규모별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